

<중점편>

중점편이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 중,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1 지적재산 창조

(1) 전략적인 지적재산활동을 펼치는 대학 및 TLO(기술이전기관)를 지원한다.

대학지적재산본부를 통한 국제적인 기본특허의 권리취득, 기술이전, 공동연구계약, 사업화지원, 지재관련 인재육성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촉진시키고, 국제수준에 걸맞는 산학관 연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전략이 충분히 전개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을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대응을 촉구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2) 대학지적재산본부 및 TLO의 일원화와 연계강화를 추진한다.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에 관련하여서는, 그 관계의 다양성을 배려하여 2007년부터 기존의 조직에 좌우되는 일이 없는 연계강화 및 일체화를 촉진하는 등, 산학관 연계기능과 기술이전기능이 가장 적절히 발휘될수 있도록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체제의 재구축을 촉구한다. 또한, 지적재산체제가 취약한 대학 등과 같은 지적단체의 국내 및 국제적인 산학관연계활동과 지방기업의 산학관연계활동을 뒷바침하기 위하여 대학과 지방의 연계, 국공사립대학간의 연계, 민간기업과의 연계, 선진적인 대학의 활동사항보급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3) 이노베이션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의 전략적취득 및 활용을 촉진한다.

2007년부터 사업화를 지향하는 경쟁적자금지원의 연구개발 등에 있어, 기본특허의 국제적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경쟁적자금의 심사에 있어서는 지적재산전략, 국제표준화전략을 심사에 고려할 것을 제도의 취지로 밝히고 검토하는 등, 지적재산의 전략적 취득과 활용을 촉진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4) 분야별 지적재산전략을 책정한다.

2007년부터, 관계부처의 협력을 얻어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정한 중점추진분야의 지적재산에 관련하여 고유의 배려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적재산의 권리자 및 이용자 등의 관계자 상황을 포함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관련한 현황과 과제 그리고 그 대응책 등을 정리한 분야별 지적재산전략을 책정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관계부처)

(5) 국제적인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기본특허의 국제적인 권리취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JST(과학기술진흥기구)가 대학이나 TLO의 해외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JST의 조사에 부가하여, 신청하는 대학 등에 따른 사전조사 및 출원경비의 일부 자기부담을 요청하여, 특허의 질을 중시한 중점적 지원을 실시한다. 그 위에 2008년에는 이 권리취득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진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6) 특허정보 등의 활용에 의한 연구개발의 전략화를 촉진한다.

대학 등, 연구현장의 특허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과 기능의 향상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궁리된 '특허정보검색소프트와 그 활용지침'을 2007년 중에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연구개발 전략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연구자가 상호간에 기능이 향상된 검색소프트를 공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개선된 검색소프트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경제산업성)

2. 지적재산 보호

I. 지적재산의 보호강화

(1) 「특허심사신속화/효율화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허심사의 대기시간을 없애도록 하는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우선 심사의 지연이 최대로 예상되는 2008년에 있어서도 '심사대기기간을 최대 29개월대로 규정'하고, 2013년에는 11개월로 단축하는 중기목표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도 이어서, 경제산업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허심사 신속화/효율화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특허심사 개혁가속플랜 2007]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개별시책의 확실한 실시와 더불어 시책간의 종합조정과 수정을 통하여 특허청 전체업무의 최적(最適)화 및 합리화를 촉진한다.

(경제산업성)

(2) 정보제공제도의 활용을 촉진한다.

특허출원에 관련하는 정보제공제도를 보다 더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특허심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출원에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2007년 5월에 기능을 확충한 '특허심사착수 예정시기조회'를 통해 정보제공의

적절한 시기를 확보한다. 동시에, 2008년 까지는 현재의 '서류제출'에 한정되어 있었던 특허청에의 정보제공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한다.

(경제산업성)

(3) 특허심사 및 심판의 수준을 유지, 향상시킨다.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심사관간의 협의 및 심사관과 심판관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2007년 4월에 설치된 품질감리실(品質監理室)을 중심으로 기술분야 품질관리의 방법을 정비하고 심사관에 품질의 분석결과를 전달, 특허심사 및 심판의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또한, 특허법 제 168조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소와의 정보교환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등, 특허청과 재판소의 판단이 서로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경제산업성)

(4) 특정분야의 특허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Life Science 분야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한 사례집'을 2007년중 작성하여 공표한다. 또한, 2007년부터, 대학 등의 연구자 및 자적재산관계자를 대상으로, Life Science 분야의 특허심사기준 및 사례집을 토대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종합과학기술회의,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5) 특허전자도서관 등을 통한 산업재산권정보의 이용환경을 정비한다.

a) 2014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특허청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最適化)계획」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완료까지의 기간에 있어여도 유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재산권정보서비스'를 가능한 것부터 선행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중에는 로드맵을 책정하고 그 실행을 도모한다.

b) 2007년 중에는 산업재산권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특허전자도서관(IPDL)에 '전문(全文)텍스트 검색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2007년 이후 현재 대학 등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는 특허정보의 고정 URL 서비스를, 시스템성능과 관계되는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그 제공범위를 일반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c) 2007년부터, 특허청이 보유하는 제품 카탈로그 등을 데이터화 시킨 '의장공지자료'에 첨부하고, 유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의장공지자료의 공개를 촉진한다.

(경제산업성)

(6) 기업의 출원전략책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확충한다.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특허출원전략을 책정함에 있어 참고가

정보로서, 주요기업의 해외출원 비율 및 특허율 등의 정보를 공표한다. 더불어, 2007년 중, 각 기업이 자사의 출원건수, 심사실적 등의 더 상세한 정보를 첨부, 입력하고,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가 가능한 [특허전략 포털사이트(가칭)]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7) 농림수산성 지적재산전략에 기본을 두는 대응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책정된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2007년부터 「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권' 및 '국산 소의 유전자원' 등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브랜드의 활용을 포함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원활한 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관계부처)

(8) '특허심사 Highway'의 발전된 전개를 도모한다.

제 1 청에서 특허로 인정받은 출원과 관련하여 제 2 청에서 간단한 수속만으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 Highway'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이미 실시된 또는 실시가 합의된 미국, 한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 국가의 참가를 도모함으로써 '특허심사 Highway'의 네트워크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활용을 촉구하여 조사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우리 일본 출원인의 '특허심사 Highway'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나라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조기의 조사 및 심사결과제공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조기심사의 활용을 장려한다. 타청의 조사 및 심사결과의 이용에 있어서는 2007년 3월에 책정된 [외국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의 이용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운용을 도모한다.

(경제산업성)

(9)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포럼'의 제창과 조기실현을 지향한다.

「식물신품종보호국제연맹(UPOV)」 아래, 동아시아 전체의 통합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2007년 중, 각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틀로서 [동남아시아식물품종보호포럼(가칭)]의 설치를 제창하고 조기실현을 도모한다.

(농림수산성)

II.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강화

(1)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의 조기실현을 도모한다.

우리 일본이 제창한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방지조약(가칭)]에 관련하여, 2007년에도 국제적인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국가들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방침과 견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며, 논의를 리드하고 조기실현을 향하여 그 활동을 가속화하여 나아간다.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2) 개인수입(輸入)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2007년에는 세관이 '지적재산침해의의(疑義)물품'을 발견한 경우, 그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침해인정수속을 취할 것 등을 명확히 한 개정통고에 준하여, 세관은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인정에 관련하여 적절한 전문위원회제도를 활용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모방품 및 해적판의 개인輸入, 개인소유 금지 등에 관련하여서도 경토를 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경찰청, 법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3) 인터넷옥션 상의 모방품 및 해적판의 거래를 방지한다.

i) 저작권법에 있어 인터넷옥션의 출품 등 해적판의 광고행위 자체를 권리침해로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2007년 중 경토, 필요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경찰청, 법무성, 문부과학성, 관계부처)

ii) 2007년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물품의 출품을 확인하고 옥션사업자에 통보한 경우에는, 권리자와 옥션사업자간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바탕으로 위법출품물의 삭제 및 출품자 정보의 제공 등의 장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운용을 촉진한다. 또한, 이 효과검증과 병행하여 권리자와 옥션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경토를 거듭하여 필요에 상응하는 법제도 등을 정비한다.

(경찰청, 총무성, 관계부처)

iii) 2007년에는 관민의 협력 아래, 소비자와 출품자의 관점을 고려하며, 권리자 및 옥션사업자에 따른 「인터넷지적재산권침해품유통방지협의회」 등을 통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a) 옥션사업자에게 위법물품의 출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본인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b) 모방품 및 해적판을 옥션사이트상에서 없애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침해품 유통방지가이드라인(가칭)]의 작성 및 운용 등을 통하여 자주적인 삭제의 강화, 각종 방책의 효과 검증 등, 옥션사업자 및 권리자가 일체가 된 자주적 대응을 촉진한다.

c) 복사상품 및 해적판의 출품과 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사이트를 개설함과 동시에 출품자와 소비자에의 계몽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권리자와 옥션사업자들의 협의회 참가를 재촉한다.

3. 지적재산 활용

I.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1) 전략적인 지적재산경영을 촉진한다.

기업에게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인재, 기술, 조직력, 고객과의 네트워크, 브랜드 등 “지적자산”的 활용을 중시하는 경영(지적자산경영)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지적재산을 경영의 핵심으로 여기고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전략의 삼위일체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부터 이러한 지적자산경영이 추진되도록 국내, 해외의 성공 및 실패사례가 기재되어진 지적재산전략사례집 “전략적인 지적재산관리를 위하여” 등을 활용하여 각 기업이 자사에 가장 적합한 지적재산전략을 책정하여 실행할 것을 장려한다.

(경제산업성)

(2) 이용되고 있지 않는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산업체산권 중에는 명확한 목적을 자니지 않고 보유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러한 산업체산권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지역사회나 중소기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적재산관리의 관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산권의 정기적인 조사와 재평가를 장려함과 동시에 라이센스, 매각 등 개방의사가 있는 특허 등에 관련하여서는 웹사이트나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공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이를 개방특허가 공개되어진 웹사이트 등의 일람리스트를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의 특허유통촉진사업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개방특허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자가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산업성)

(3) 지적재산신탁제도를 이용한 지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촉진한다.

2007년부터, 지적재산신탁의 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룹기업내의 지적재산신탁활용 검토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출신청수속에 필요한 서류의 견본(수속안내도, 각종서류의 참고예 등)을 정비하여 공표한다.

또한,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세미나와 인터넷을 통하여 그룹기업내 신탁과

관리운용형신탁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적재산신탁제도의 보급과 계몽, 동시에 이용자에게 참고가 되는 신탁의 유형별 스킴, 이용 매리트,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청, 경제산업성)

II. 국제표준활동을 강화한다.

(1)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실행한다.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척도하게 실행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2) 산업계 당사자에 의한 행동지침의 책정과 실행을 도모한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및 각 공업회 등의 산업계에, 각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련한 '행동지침'을 2007년부터 책정, 공표함과 동시에, 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3) 국가 전체의 연구활동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국비지원의 연구개발 평가를 위한 지침' 등에 있어, 연구성과의 국제표준화가 기대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 등의 평가항목으로서 국제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제표준의 획득에 의하여 우리 일본의 산업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연구자금의 지원을 실시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4) 국제표준화 활동의 리더를 육성한다.

2007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의 경험자를 활용하는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차세대의 국제표준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제표준인재육성학원(가칭)"을 창설하는 등, 경험자의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차세대 인재에 계승시키고 국제표준화활동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5) 아시아 등 해외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국제표준화활동의 수준을 올리고, 인적네트워크의 강화, 국제표준안의 공동제안 등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표준화 Initiative]를 2007년 중